

# 책임의 의미와 성격에 관한 역사적 탐색\*

## A Historical Inquiry into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Responsibility

이 영 록\*\*

Lee, Young-Lok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한국에서의 책임 개념의 수용과 특징  |
| II. 용어의 등장과 어원            | V. 현대 책임 개념의 발전: 자유와 책임의 |
| III. 귀책 개념의 연속과 전환으로서의 책임 | 역전                       |
|                           | VI. 맺음말                  |

이 글은 책임 개념의 역사를 통해 책임의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어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8세기 중반이고, 프랑스혁명 이후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함께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후 철학 영역에서 책임은 귀책(imputation)을 대체하는 용어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책임은 이전 귀책 개념을 통해 논의되던 내용과 책임이 끌고 온 새로운 내용이 중첩적으로 책임의 의미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한자어 책임이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의미의 추가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 현대에는 자유에 선행하는 책임의 전면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책임 개념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끌어낸 책임의 의미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은 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벌이는 의사소통적 대결이다. 둘째, 책임은 의사소통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적 개념이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이다. 셋째, 책임 개념은 기계론적 결정론과는 양립 불가능하나, 행위 당시의 타행위 불가능성과는 양립 가능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 넷째, 우리말 책임은 수용 과정에서 문답의 뉘앙스는 약화되고 부담의 뉘앙스는 강화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서양의 책임 인근 단어들까지 포괄하는 번역

투고일 : 2018. 12. 31. / 심사외일 : 2019. 1. 16. / 게재확정일 : 2019. 2. 7.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Professor, College of Law, Chosun University

어로 사용됨으로써 책임 실천에 혼란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주제어] 책임, 귀책, 의사소통 (문답), 자유의지, 결정론, 요나스, 레비나스

## I. 머리말

책임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사회생활 깊숙이에 뿌리박혀 전방위로 작용하고 있는 용어도 달리 찾기 어려울 것이다.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 역사적 책임, 개인책임, 기업책임, 집단책임, 행위책임, 결과책임, 위험책임 등등은 책임이 얼마나 많은 영역과 층위에 관통하고 있는 용어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례들이다. 그런데 이토록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책임이라는 개념이 일관된 의미를 전달하는지는 의문이다. 책임이라는 용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 사용되고,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사태의 정확한 실체 내지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만 탐구해 들어가려 해도, 곧 그 용례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길을 잃고 헤매기가 일쑤이다.

이런 현상은 일차적으로 책임에 관한 학문 횡단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 기인한다. 책임에 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철저히 구획화된 결과로, 각 분야의 책임 개념이 국지적 게토(ghetto)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심지어는 책임 개념의 발전과 썰 수 없는 관련을 맺어온 법학 영역 안에서조차 그렇다. 법적 책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조차 그 현상적 차이가 가볍게 거론되고 있을 뿐, 그 의미구조에 이르기까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충분히 규명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이론적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통일된 법적 책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개념의 내용들은 법 분야와 생활관계에 따라 다르다”<sup>1)</sup>고 단언하기까지 한다.

나아가 각 분야 내에서도 책임이라는 용어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형법 분야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이라고 말할 때의 책임과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은 결코 동일한 외연을 가진 단어가 아니다. 영어의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단어 분석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하트(H. L. A. Hart)는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을 역할 책임(role responsibility), 원인 책임(cause responsibility), 부담 책임(liability responsibility), 능력 책임(capacity

1) S. Beck, “Schuld und Verantwortung”, in: E. Hilgendorf, J. C. Joerden(Hrsg.), *Handbuch Rechtsphilosophie*, J. B. Metzler Verlag, 2017, S.394.

responsibility)으로 불렸다.<sup>2)</sup> 하트의 이런 분류에는 오늘날 비판도 제기되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의미들 사이의 관련성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의미의 차이들조차 명확히 의식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말 책임이라는 단어는 서양의 서로 다른 단어들을 하나로 뭉뚱그린 번역어로 쓰이기 있기 때문에 책임에 관한 일관된 이해에 더 곤란을 느끼게 된다.

전통적 책임과 현대적 책임의 구조와 성격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이한데도, 두 개념이 어느 하나에 대체되지 않고 중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또한 책임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통적인 과실책임 원칙과 현대의 무과실 책임주의의 경향 내지는 위험책임 사이의 충돌, 개인에게 귀속하는 책임의 조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도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가는 집단책임 등에서 책임 개념의 그런 어지러운 실상을 대표적으로 목도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라는 개념은 이 차이들과 충돌을 넘어서는 더 깊은 공통의 토대를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책임 개념에 대한 이상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양한 책임 용례들 사이의 관계와 분기의 원인, 전체 책임 개념의 성격과 구조 등에 대해 역사적 탐구를 통해 개관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순수한 책임의 개념사나 이념사에 관한 연구는 아니다. 비록 개념과 이념의 역사적 탐구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앞의 문제의식에 대한 단초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 역사적 연구이다. 서구에서도 책임의 개념사나 이념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아직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sup>3)</sup> 따라서 이 부분에 천착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글은 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기존 개념사에 대한 성과들을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한 대답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연구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sup>4)</sup>

2) H. L. A. Hart,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211-230.

3) K. Bayertz, *Verantwortung: Prinzip oder Problem?*,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S.4.

4) 이런 점은 이 연구의 상당 부분이 기존 책임개념사의 성과에 그대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용어의 등장과 어원

책임이라는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그토록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서양에서도 오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영어 ‘responsibility’, 독일어 ‘Verantwortung’ 혹은 ‘Verantwortlichkeit’, 그리고 프랑스어 ‘responsabilité’는 모두 멀리 ‘대답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respondere’에 어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명사로 영어 단어 responsibility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766년의 일로 알려지고 있다.<sup>5)</sup> 영국에서 왕이 아니라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발생한 헌법논쟁이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sup>6)</sup> 이것이 프랑스로 수출되어 프랑스어 ‘responsabilité’이 1783년 이래 사용되기 시작했고, 프랑스혁명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sup>7)</sup> 한편 독일어 단어 ‘Verantwortung’은 중고지 독일어(Mittelhochdeutsch; 11세기 중반- 14세기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Verantwortlichkeit’는 신고지 독일어(Neuhochdeutsch)에서 처음 그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sup> 이탈리아어로는 19세기 이전에는 해당어의 사용이 발견되지 않는다.<sup>9)</sup>

라틴어 ‘respondere’는 원래 법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였다. 그 기원이 되는 ‘spondeo’는 특히 결혼과 같은 의식에서 신랑 측의 구속력 있는 서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는데, 그에 대응하는 신부 측의 서약 행위를 ‘respondeo’로 불렀다. 이로부터 발전하여 ‘respondere’는 법적 추궁에 대한 대답 내지 정당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sup>10)</sup> 책임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보이는 법적 성격은 독일어 책임 개념의 초기 사용에서도 확인된다. 15세기 후반 이래 ‘Verantwortung’은 고소에 대하여 “법정에서 자기 행위의 설명 내지 옹호”<sup>11)</sup>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18세기 말까지도 그

5) 최초의 등장 시기는 문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중 1766년이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이다. 형용사로 는 훨씬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

6) L. Fonnesu, “Der Begriff der Verantwortung in der Neuzeit und in der Aufklärung”, in: L. Heidbrink/C. Langbehn/J. Loh(Hrsg.), *Handbuch Verantwortung*, Springer VS, 2017, S.113.

7) L. Fonnesu, *a.a.O.*, S.112, 113.

8) S. A. Seeger, *Verantwortung: Tradition und Dekonstruktion*, Königshausen & Neumann, 2010, S.42. 제거(Seeger)는 ‘Verantwortung’은 주로 철학적 맥락에서, ‘Verantwortlichkeit’는 법적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S.51). 그러나 전문 학술서적들에서도 두 단어는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 구분 없이 다루기로 한다.

9) H. Lenk / M. Maring, “Verantwortung”, in: J. Ritter(Hrs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11*, Basel: Schwabe, 1971, S.565.

10) S. A. Seeger, *a.a.O.*, S.45.

개념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때는 법과 관련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sup>12)</sup>

그러나 법정 용어로서의 책임은 곧 신의 법정에서의 변명이라는 맥락을 통해 종교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그리고 이는 다시 양심을 매개로 도덕과 윤리 영역으로까지 개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양의 전통에서 양심은 신을 내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 책임은 세속화된 종교적 책임”<sup>13)</sup>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서양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널리 확산되게 된 데는, 앞에서 암시된 대로 정치 영역에서 책임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책임 개념이 정치 영역에서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책임정부의 개념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일단 그 처음 사용은 법적 용어로서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영어의 책임이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에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고』 70번에서 두 종류의 책임을 언급하였다. 집행부의 권력이 다수에게 돌아가면 책임이 파괴되기 쉽다는 맥락에서인데, 그 하나는 비난(censure)이고, 또 하나는 형벌이다.<sup>14)</sup>

앞에서 본 하트의 책임의 의미 분류에 따를 때, 책임이란 단어가 일단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부담책임의 의미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책임이 법정에서의 문답이라는 본래의 사용 맥락에서 문답 결과로서의 법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것이 나아가 법 이외의 제재까지도 의미에 포함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해밀턴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그와 유사한 의미의 연관구조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형벌이나 비난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설명해야 하는 공화주의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영국의 국왕과 같은 경우는 직무행위로 인해 개인적으로 제재에 처해지는 일은 없다. 즉 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처럼 부담 책임을 의미하는 책임이라는 개념에는 문답이라는 요소가 항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영역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책임이라는 개념이 학문적, 특히 철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였다. 맥키온(Richard McKeo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sup>15)</sup> 책임이 학문적으로 논의된 최초의 사례는 『연방주의자 논고』로부터

11) M. Forschner, “Verantwortung”, in: Görres-Gesellschaft(hrsg.), *Staatslexikon 5Bd.*, Freiburg/Basel/Wien: Verlag Herder, 1989, S.590.

12) K. Bayertz, *a.a.O.*, S.17.

13) *Ibid.*, S.18.

14) A. Hamilton / J. Jay / J. Madison, *The Federalist Papers*, Random House LCC US, 2003, p.431.

15) R. McKeon, “The development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Revue internationale de*

70여 년이 지난 후인 1859년에 출판된 베인(Alexander Bain)의 책에서였다. 이 책에서 언급된 내용은 『연방주의자 논고』에서와 같은 책임의 용례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 베인은 오히려 책임이라는 단어를 형벌가능성(punishability)이란 단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환유적 표현이어서 형벌가능성(punishability)이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보다 정확히 전달한다는 것이다.<sup>16)</sup> 그의 부연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면, “사법(justice)의 형식이 갖추어진 모든 국가들에서 범죄자는 형벌을 받기 전에 자신에 대해 제기된 고소에 대해 답변할(answer) 것이 허용된다. [환유적 표현으로] 이런 사정을 들어 형벌을 치칭해왔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소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에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sup>17)</sup>

이상의 언급은 책임의 어원에 담겨있는 문답적 요소와 형벌의 연관을 정확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책임과 형벌의 긴밀한 연관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개념적으로 엄연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베인은 형벌가능성의 조건으로 전통적인 논의에 따라 행위가 행위자의 능력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능력 내의 행위가 되기 위해 자발적(voluntary) 행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행위 또는 형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언급한다.<sup>18)</sup> 그의 이런 설명은 그 당시에도 이미 특정한 형벌관을 반영한 것이다. 비록 그것이 전통적인 입장에 입각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벌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역사적으로는 반대로 책임 없는 형벌도 존재해 왔다. 따라서 책임을 대신하는 형벌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당시에 책임을 형벌로 이해하려는 견해에 대해서는 “잘못된 표현”<sup>19)</sup>이라는, 혹은 “형벌은 책임의 근본적 개념이 아니다”<sup>20)</sup>는 비판

*philosophie*, Vol.11,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1957, p.6.

16) A. Bain, *The Emotions and the Will*, London: John W. Parker and Son, 1859, p.564. <[https://books.google.co.kr/books?id=S\\_MMAQAAMAAJ&pg=PA564&hl=ko&source=gb\\_toc\\_r&cad=3#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S_MMAQAAMAAJ&pg=PA564&hl=ko&source=gb_toc_r&cad=3#v=onepage&q&f=false)>, 검색일: 2018.12.6.

17) *Ibid.*, p.564.

18) *Ibid.*, pp.565-567.

19) F. H. Bradley, “The Vulgar No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Connection with the Theories of Free-Will and Necessity”, *The Ethics*, 1876, p.4. <[https://books.google.co.kr/books?id=uFuMNgwBKUC&pg=PA1&hl=ko&source=gb\\_toc\\_r&cad=3#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uFuMNgwBKUC&pg=PA1&hl=ko&source=gb_toc_r&cad=3#v=onepage&q&f=false)>, 검색일: 2018.12.6.

20) Lévy-Bruhl, *L'Idée de Responsabilité*, Paris: Librairie Hachette, 1884; McKeon, *op. cit.*, p.6에서 재인용.

이 존재했다.<sup>21)</sup>

베인 이후 철학적 논의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베인의 주장처럼 형벌 내지 형벌가능성으로 대체하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오히려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전의 ‘imputation’(귀책) 또는 ‘accountability’(담책)<sup>22)</sup>을 대신하는 용어로 철학적 논의에 빠르게 침투해 들어갔다. 베인이 형벌가능성으로 논한 내용도 종래 귀책이나 담책의 내용으로 다루어 온 것과 일치하였다. 귀책과 담책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뒤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두 입장이 대립해 왔다. 그렇지만 어느 입장에 서든 두 단어는 결국 좀 더 넓은 함의를 갖는 ‘귀책’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점은 귀책의 라틴어 어원인 imputatio와 동일 어근에서 파생한 putare가 영어의 account가 의미하는 ‘계산’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imputatio에 해당하는 독일어 ‘Zurechnung’이 계산이라는 의미의 ‘Rechnung’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이렇게 볼 때 베인의 주장은 오히려 도덕철학에서 기존의 귀책과 관련된 내용이 책임이라는 표제 아래서 논의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책임은 귀책이나 담책과 같이 대체된 단어들이 이어온 긴 철학적 논의의 역사와 접목하게 되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이 시기에 귀책이라는 단어를 책임이라는 단어가 대체해가는 경향이 생겨났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책임 개념이 넘겨받은 ‘귀책’ 개념을 둘러싼 당시의 논의 상황과 역사를 잠시 거슬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I. 귀책 개념의 연속과 전환으로서의 책임

책임 개념으로 이어지는 귀책과 관련된 논의 역시 귀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미 어떤 경우에 특정 사태나 결과의 원인을 인간의 행동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 자신에게 있는 경우와 행위자 외부에 있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

21) 다만 이들의 비판은 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형벌로 이해한 밀(J. S. Mill)의 견해에 대한 것이다.

22) ‘accountability’는 우리말로 책임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보통이나, 여기서는 ‘responsibility’와 구분하기 위하여 담책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23) 이들 단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P. Ricoeur,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An Essay in Semantic Analysis”, in: P. Ricoeur, *The Ju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14, note 3.

면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 자신에게 있는 경우란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였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의 조건들에 대한 인식 아래서 자신의 의식적인 결정에 따라 행하였는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sup>24)</sup>

중세 스콜라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이어받아 어떤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일정한 조건 아래서 행위자와 연결시키는 데 ‘imputatio’라는 용어로 개념화했다. 이때 ‘imputatio’는 행위의 평가와 관련되었다. 따라서 ‘imputatio’가 인정되는 경우 그 평가에 따라 칭찬이나 비난, 혹은 보상이나 제재가 뒤따랐고, 이런 점에서 ‘imputatio’ 개념은 행위에 따른 외부의 평가적 반응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sup>25)</sup>

물론 귀책의 개념사에서 행위와 행위자의 관계에만 귀책 개념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특히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론 공로가 그 자신이 아닌 죄인들에게 전가된다는 교리를 강조하면서 imputatio 개념을 사용하였다.<sup>26)</sup>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론적 전통이 중세를 거쳐 근대의 철학적 논의에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이에르츠(K. Bayertz)의 표현을 빌면 책임 개념의 “고전적 모델”<sup>27)</sup>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귀책 논의는 17, 18세기 자연과학의 발전과 함께 커다란 분기를 이루게 된다. 그 분기란 다른 아인 인간 행위의 결정론 대 자유의지론 사이의 대립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보듯이 귀책 개념은 처음부터 인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자연과학의 발달이 결정론적 사고를 확산시키면서 귀책 개념이 의미 있는 개념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게 된 것이다. 형법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전통적인 응보로서의 형벌을 고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형벌은 잘못된 원인으로서의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잘못된 행위를 예방한다는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한도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점증하였다.

다른 한편 결정론이 세력을 얻어 가면 갈수록 그에 저항하는 흐름도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이런 흐름의 절정에 선 자가 바로 칸트(E. Kant)인데, 그는 아마도 아리스토텔레

24)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 최명관 옮김, 니코마코스윤리학, 서광사, 1984, 161-163 쪽 참조.

25) R. McKeon, *op. cit.*, p.12.

26) P. Ricoeur, *op. cit.*, p.15.

27) K. Bayertz, a.a.O., S.5.

스 이후 책임 개념의 고전적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에게서는 귀책의 가능성이야말로 인격(person)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였다.<sup>28)</sup> 귀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연계의 인과법칙에서 비롯되지 않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인과법칙과는 철저히 분리된 이 자유 개념을 보존하기 위하여 칸트는 실천이성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가정했다. 칸트 자신이 정언명령으로 명명한 이 법에 따르는 행위만이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 행위, 즉 자율적 행위이다.

근대사상에서 책임에 대한 논의는 이렇듯 “무엇보다도 기계적 세계상과 인간상이 던진 의문들에 의해 규정된 공간에서 발생했다.”<sup>29)</sup> 책임 개념이 정착되기 전 오랜 기간 인간의 윤리적 삶을 규율하는 사회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온 것은 귀책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사이에서 이론적 교착에 빠져 예전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닳아버린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논쟁의 때가 묻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개념이 부딪친 상황을 타개할 실용어로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기존 단어를 빠르게 대체해 갔다. 이론적 대립과는 별개로 인간 행위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개념적 도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했고, 이런 필요의 틈을 메운 것이 책임 개념이었던 것이다.

사실 결정론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고전적 귀책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홉스(T. Hobbes), 로크(J. Locke), 흄(D. Hume)과 같은 결정론자들도 형벌 등의 제재를 예방적 개입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옹호하는 인과적 세계관을 철저히 관찰한다면, 사실 인간 행위에 대한 예방적 개입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방적 개입조차도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결정되어 있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유의지론을 고수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 인간의 의지가 자신의 욕구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 내지 발휘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유의지론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오직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일 때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덕적 선악은 어떤 욕구의 만족이나 감정의 선호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 그것은 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악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체 선 또는 악이란 어떤 기준도 제공된 바 없기 때문에 도덕적

28) L. Fonnesu, a.a.O., S.128.

29) *Ibid.*, S.112.

판단은 “공허한”<sup>30)</sup>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런 이유로 칸트는 정언명령이란 선험적 법을 가정해야 했던 것이다. 칸트에게서 자유의지와 법은 상호지지 관계에 섰다. “자유가 도덕법의 존재근거(ratio essendi)라면, 도덕법은 자유의 인식근거(ratio cognoscendi)”<sup>31)</sup>였다. 그러나 정언명령도 내용의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음은 이후의 발전이 보여준다. 헤겔을 거쳐 신칸트학파의 켈젠(H. Kelsen)에 이르러 관계의 균형추는 완전히 법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이다. “귀책을 가능케 하는 것은 … 자유가 아니다. 반대로 귀책은 의지의 조건적 결정[실정법]을 전제한다. 누군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귀속하는(impute)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에 그는 자유로운 존재이다.”<sup>32)</sup>

앞에서 언급한 베인의 논문보다 16년 뒤에 나온 브래들리(F. H. Bradley)의 책임에 관한 윤리학 논문의 제목은 도덕철학 영역에서 책임 개념이 부상하는 이런 이론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 그 제목은 “책임에 관한 통속적 관념: 자유의지와 필연성의 이론과 관련하여”(The Vulgar Notion of Responsibility: In Connection with Theories of Free Will and Necessity)였다. 이 논문에서 브래들리는 자유의지론이나 결정론 모두 책임에 관한 일반인들의 통속적 관념과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그는 두 이론 모두 입증될 수 없는 고차적인 담론이라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오히려 통속적인 견해에 기반한 책임 철학임을 결론으로 암시한다.<sup>33)</sup>

브래들리는 논문의 결론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책임에 관한 통속적 관념을 기술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이론화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이론화는 브래들리가 인용하고 있는 밀(J. S. Mill)에게서 보인다.<sup>34)</sup> 그는 결정론(determinism)과 운명론(fatalism)을 구분한다. 결정론이란 특정 시점에서 행위는 외부 환경과 내부 동기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인 반면에, 운명론이란 인생의 모든 사건이 변화의 여지없이 미리 결정된 대로 진행된다는 주장이다. 밀은 운명론을 배척하고 결정론을 취하는데, 결정론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결정론을 취하는 이상은 자연적 인과관계로부터 완전히 절연된 절대적 원인으

30) P. Ricoeur, *op. cit.*, p.18.

31) *Ibid.*, p.18.

32) *Ibid.*, p.19.

33) F. C. Bradley, *op. cit.*, p.38.

34) 이하 밀의 책임 이해에 관해서는 M. Schefzyk, “John Stuart Mill: Ethics”,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www.iep.utm.edu/mill-eth/#H12>>, 검색일: 2018.12.6. 참조.

로서의 자유의지 역시 부정한다. 특정 시점의 조건에서 행위를 결정하는 욕구나 동기 등은 인과관계의 사슬 안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책임은 형벌을 의미한다.”<sup>35)</sup>는 밀의 언명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책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달리 행위할 수 없다는 결정론의 당연한 귀결이다. 형벌을 통해서만 비로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형벌은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나아가 형벌과 같은 외적 제재에 따라 책임이 결정된다면, 책임은 자의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책임 개념은 도덕적 힘을 가질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적절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밀의 대답은 형벌에 관한 사람들의 깊은 신념 내지는 감정을 언급함으로써 출발한다. 그것은 곧 형벌은 그에 마땅한(deserve) 행위에 결부된다는 관념이다. 우리 대부분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관념(감정)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후자보다 전자를 선호한다고 밀은 주장한다. 그런 도덕적 관념의 성질이나 기준이 어떤 이론에 근거하느냐, 혹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괄호 안의 문제이다. 중요한 점은 그런 관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만일 누군가가 그런 도덕적 관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거부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고치도록 하기 위하여, 혹은 그런 행위들로부터 자기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밀은 오늘날의 용어로 ‘전향적’(prospective) 관점에서 형벌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도덕적 관념에 근거하여 형벌의 자의성을 예방한다. 비결정론을 전제하는 응보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응보의] 감정(sentiments)”<sup>36)</sup>을 형벌과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로써 책임이라는 단어는 해결할 수 없는 이론적 굴레에서 벗어나 실천적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레비 브뤼(Levi-Bühl)도 1884년의 한 단행본<sup>37)</sup>에서 책임의 이념에 대해 본격적인 탐

35) J. S. Mill, *An Examination of Sir William Hamilton's Philosophy and of the Principal Philosophical Questions Discussed in His Writings*, 2nd edit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65, p.506.  
[https://books.google.co.kr/books?id=1pxyZrrR-0C&pg=PA488&hl=ko&source=gbs\\_toc\\_r&cad=3#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1pxyZrrR-0C&pg=PA488&hl=ko&source=gbs_toc_r&cad=3#v=onepage&q&f=false), 검색일: 2018.12.6.

36) J. S. Mill, op.cit., p.513.

구를 시도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밀과는 다른 방향에서 책임 개념의 사회적 유효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브뤼일은 밀과는 정반대로 책임은 이성적인 자유 존재의 관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sup>37)</sup> 그러면서도 주관적 자유 관념에 사회에서 기원하고 사회의 진화와 함께 발전하는 합리성(rationality)을 결합하였다.<sup>38)</sup> 이로써 책임 개념은 칸트에게서와 같이 순수한 정신세계와만 관련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될 수 있었다.

물론 책임 개념의 등장으로 결정론 대 자유의지론의 오랜 논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 개념으로 논쟁이 전이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극단적인 결정론이나 극단적인 자유의지론 어느 한쪽 입장의 결정적인 승리로 기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인식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런 자각 위에서 책임 개념은 여전히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갈 수 있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법정, 그리고 이어 정치라는 매우 실천적인 현장의 느낌을 여전히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 어원인 ‘응답하다’ 혹은 ‘반응하다’라는 의미가 일상 경험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통속적 관념의 차원에서 운명론을 배격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실천성을 지향하는 대체어로서는 책임이 그야말로 적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임과 관련한 경험적 인식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또 한 가지 책임 개념이 도덕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잡아 가는 데는 기존의 귀책이나 담책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현상의 대두도 배경이 되었다. 바이에르츠는 이런 새로운 현상을 “산업화로 인한 노동분업과 기술화”<sup>40)</sup>로 초래된 “인간 행위의 구조적 변화”<sup>41)</sup>로 설명했다. 그것은 책임 개념이 흡수한 기존의 귀책의 관점에서는 사회에 발생한 부정적 결과를 어느 특정 행위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특정 행위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요청은 상존한다. 여기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협업적 분업과 기술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정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회의 유익이 훨씬 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현실의 요청과 기존 개념

37) Lévi-Bruhl, *op. cit.* 참조.

38) McKeon, *op.cit.*, p.22에서 재인용.

39) *Ibid.*, p.22에서 재인용.

40) K. Bayertz, a.a.O., S.25.

41) *Ibid.*, S.24.

사이의 간격이 책임 개념이 자라갈 수 있는 토양이 되었던 것이다.

행위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기존의 구조가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떤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각 개인들의 행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발생한 결과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정도일 수 있다. 부정적인 결과는 그런 행위들이 서로 결합되고 상승되어 일어난 전체로서의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런 경우 누가 결과를 만들어 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기술화에 관해서도 동일한 문제점에 봉착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술의 사용자는 사용 시점에서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 기술로 인한 구체적인 부정적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기술 자체는 그 고도화로 인해 예견치 못한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비난받을 만한 행위의 개재 없이 기술의 사용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그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책임 개념은 서로 관련되는 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첫째, 이제 보다 중요한 점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비난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아니다. 장래 개연성 있는 부정적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방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예방적 부담에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일이 필요해진다. 책임은 이제 달성해야 할 과제를 의미한다. 하트가 분류한 책임 의미 중 역할책임(role-responsibility)의 의미가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위험책임화의 경향이다. 위험의 원천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자는 위험의 발생이 운영자의 비난받을 태도에 귀착되느냐에 관계없이 그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위험을 인수해야 한다.<sup>42)</sup>

여기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책임의 탈도덕화 현상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책임의 윤리적 초점은 행위 배후에 있는 의도를 향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새로운 현상에서 요구되는 책임에서는 행위의 윤리적 평가가 장래 발생하게 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책임의 구조는 결과주의적 윤리의 성격을 띤다.<sup>43)</sup> 이 경우 행위자는 여전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쁜 결과가 야기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sup>44)</sup> 전통적 관점에서는 윤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이 책임의 구조를 새로운 시대

42) *Ibid.*, S.29.

43) S. A. Seeger, a.a.O., S.228.

44) *Ibid.*, S.228.

의 윤리의 문제로 포착한 이는 베버(Max Weber)였다. 그는 전통적인 윤리를 ‘심정윤리’(Gesinnungsethik)라는 이름으로 특징짓고, 책임의 새로운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라는 이름으로 심정윤리에 대비시키고 강조했던 것이다.<sup>45)</sup>

그러나 베버의 대비가 보여주듯이 새롭게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 책임의 개념이 과거 귀책 논의로부터 넘겨받은 전통적인 책임 구조를 대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구조에 새로운 구조가 중첩되는 방식으로 개념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오늘날까지도 곤혹스럽게 남아 있는 책임 개념의 이중구조는 그 단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 부상하던 시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상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책임 사건은 그 사회적 맥락 내지는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해결 작동 방식이 작용하게 되었다. 해결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명히 나뉘지 않는 사건의 사회적 맥락 내지는 성격의 경계를 그어야 하는 부담을 안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이중구조야말로 책임 개념의 실천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증좌이다. 책임의 자연적 구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적인 사실로서의 책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은 고전적 책임 개념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책임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에서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과의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이 문답의 형식을 근간으로 발전해 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다. 문답은 항상 문답 당사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그 관계는 문답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란 것이 인간 내면에 하나의 실체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여겨져 온 것은 책임 개념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다. 신의 법정에서의 판단이야말로 책임에 관한 궁극적이고, 절대적으로 바름을 보증하는 판단이다. 신의 판단은 내면적 동기로 향한다. 이런 신의 자리를 양심이 대체하게 되었을 때, 주체, 객체, 가치체계에 더하여 심급까지 “개인적 양심이라는 한 점으로 축소”<sup>46)</sup>되었다. 이로써 자기책임성이 책임의 가장 근본적인 유형의 책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sup>47)</sup> 그러나 책임이라는 단어의 등장과 발전이 바로 법, 정치, 종교, 도덕 등의 각 분야로 확산과 분화되는 과정이었다. 그 확산과 분화의 매개에는 책임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요구 또는 추궁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45) M. Weber, *Politik als Beruf*, Duncker & Humboldt, 1919: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문예출판사, 2017 참조.

46) K. Bayertz, a.a.O., S.19.

47) *Ibid.*, S.19.

#### IV. 한국에서의 책임 개념의 수용과 특징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 용례가 거의 대부분 서양으로부터 수용된 것이라 보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보아 온 책임의 이중적 구조가 우리말 책임에도 그대로 각인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서양어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한자어 책임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 책임에는 수용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 고유한 특징을 구비하게 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책임이라는 한자어의 유래는 멀리 장자(莊子)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자(외편) 천도(天道) 편에 “無為也、則任事者責矣”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sup>48)</sup> 그렇지만 한자 책(責)과 임(任)이 결합하여 ‘책임’이란 조어로 등장한 것은 그보다도 한참 후의 일일 것이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펴낸 우리나라 최대 한한사전인 《漢韓大事典》의 ‘책임’ 항목에는 《新唐書》의 “觀太宗之責任也”라는 구절이 소개되어 있다.<sup>49)</sup> 《新唐書》가 완성된 때가 1060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sup>50)</sup> 중국에서는 이미 그때쯤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東人之文四六》(1336-1340년)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실이 발견된다.<sup>51)</sup> 그러나 《東人之文四六》이 고려 말 문인 최해(崔瀼)가 신라 최치원(崔致遠)에서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시문을 선집한 것이므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된 시기는 그 편찬 시기보다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간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최홍의(崔弘義)가 금요위장군 섭형부상서(金吾衛將軍攝刑部尙書)를 사양하는 것을 운허하지 않는다는 비답(批答) 중에 나온다. 최홍의가 12세기 전의 인물임을 감안하면,<sup>52)</sup>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도 늦어도 그때쯤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승려 추우호우엔이(仲方円伊)의 시문집

48) <<http://d.hatena.ne.jp/t-hirosaka/20080417/1208418601>>, 검색일: 2018.12.6.

4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漢韓大事典 제13권,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참조.

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33360&cid=51293&categoryId=51293>>, 검색일: 2018.12.6.

51) 《東人之文四六》 7권, 「崔弘義讓金吾衛將軍攝刑部尙書不允 亡名甲」에 “爵位既高, 責任又重”(작위 이미 높으니 책임 또한 중하다)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52) 《고려사》 15권에 인종 6년(1128년) 6월에 최홍의를 호부상서 좌우위상장군(戶部尙書左右衛上將軍)에 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懶室漫稿》(1413년경)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sup>53)</sup>

《漢韓大事典》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책임이란 단어는 “직무와 직책을 맡김. 임무를 부여함”, 또는 “본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54)</sup> 청나라 때 행정용어사전에 해당하는 《六部成語》에서도 비슷하게 풀이되어 있다.<sup>55)</sup> 이는 서양어의 책임이 한편으로는 긍정적 상태를 유지해야 할 역할을 의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유사점이 서양어 ‘responsibility’의 번역어로 한자어 책임이 선택된 이유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양어의 책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의 축은 한자어 책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행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제재의 귀속이라는 맥락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의 한자어 책임은 순전히 서양어 책임의 번역에 의해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한자어 책임은 단지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뿐만 아니라, ‘liability’의 번역어로도 선택되었다. 독일어의 경우 ‘Verantwortung’이나 ‘Verantwortlichkeit’뿐만 아니라, 영어 ‘liability’(이하 ‘부책’)에 해당하는 ‘Haftung’, 더 나가 ‘Schuld’까지도 모두 책임으로 번역되었다. 물론 영어에서도 책임과 부책은 의미가 거의 중첩될 정도로 의미연관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앞에서 본 것처럼 책임을 형벌과 같은 제재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었다. 하트가 부담책임을 책임의 중심적 의미로 든 것도 그런 흐름을 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은 책임에는 거의 항상 부담이 뒤따른다는 경험적 사실을 전제로 한 용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책임과 부담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양어 책임 용어의 발원에는 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싼 문답이 놓여 있으나, 부책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한자어 책임 역시 서양어 책임이 갖는 정당성이라든지 문답과 같은 요소들과의 연관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서양어의 책임과 부책을 구분할 수 있는 예민함을 결여하고 있었고, 그 결과 양자의 공통된 번역어로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부담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말 책임 이해는 ‘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같은 번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서양의 단어들이 책임으로 번역되었을까? 먼저 서양 법률용어의 한자 번역어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마틴의 《萬國公法》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53) <<http://d.hatena.ne.jp/t-hirosaka/20080417/1208418601>>, 검색일: 2018.12.6.

5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앞의 책, 2008 참조.

55) 책임 항목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本任應管應辦一切分所應爲之事” <<https://blog.naver.com/imaginehan/10174754565>>, 검색일: 2018.12.6.

않는다. 원서인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sup>56)</sup>에는 드물지만 ‘responsibility’나 ‘liability’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렇지만 《萬國公法》의 해당 부분에서는 책임이란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의역한 것을 볼 수 있다.<sup>57)</sup>

한자어 책임이 지녔던 전통적 의미 외의 서양적 책임 개념 요소의 수용은 갑오개혁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 특히 일본과의 법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간 공문서들에서 전통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 한 예로 건양 원년(1896) 3월 11일 한성부 관찰사 이하영(李夏榮)이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보낸 보고서를 들 수 있다. 보고서 중에 일본영사관 측의 공문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右는 畢竟貴國政府가 我國人에 對한 保護不行에서 起한 事件이라면 貴政府에서 其責任을 負하는 것은 當然한 理致有之候間”<sup>58)</sup>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또 같은 달 인천부 관찰사가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보낸 보고서에도 일본 영사의 공문이 첨부되었는데, 여기에도 “辦償의 責任을 負할 수 없다”<sup>59)</sup>라는 표현이 나온다.

얼마 지나서는 우리 정부 내부의 공문에서도 서구로부터 유래한 책임 개념이 사용된다. 가령 광무 3년(1900)에 한성부재판소에서 법부대신에게 보낸 질품서(質稟書)에 현릉의 제물(祭物)을 잃어버린 데 대한 능수복(陵守僕)의 ‘책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만이 관계된 문서에서 이런 용례는 아직 일반적이라고 할 만큼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는 아니다. 이로 보건대 한자어 책임의 새로운 용례는 일본에서 법률용어로 번역된 것이 외교 사안 처리과정에서 우리에게 들어와 서서히 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의 두 보고서에서 언급된 책임은 직접적으로 제재나 불이익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부책의 의미가 강하다면, 마지막 질품서에서 언급된 책임은 잘못된 결과의 원인을 누구

56) H.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55. <<https://archive.org/details/elementsofintern00whea&autoplay=1&playset=1>>, 검색일: 2018.12.6.

57) 예를 들어 휘튼의 원서 §390의 소제목은 “responsibility of the captor’s government for the acts of its commissioned cruisers and courts”(H. Wheaton, *op. cit.*, p.483)인데, 그 번역은 “照例所連在國不在民”으로 되어 있다(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만국공법*,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81, 386쪽). 또 휘튼의 원서 §318에는 가해국 국민이 상대국의 보복조치로 지게 되는 재산상의 책임을 설명하면서 ‘liab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H. Wheaton, *op. cit.*, p.403), 《萬國公法》에서는 이를 “可拏其貨物以爲抵償”(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352쪽)로 번역하였다. 즉 상대국이 “그[가해국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고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역한 것이다. 그 외에도 But whe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aptors ceases, that of the State begins.(p.484) → 民事卽爲國事(386쪽), It is responsible to other States (p.483) → 別國仍可向其國討索也(386쪽) 등 참조.

58) “보고서 제3호”(수신자 외부대신 이완용, 발신자 한성부관찰사 이하영), 건양 원년 3월 11일.

59) “보고서 제12호”(수신자 외부대신 이완용, 발신자 인천부관찰사 박세환), 건양 원년 3월 20일.

의 행위에게로 돌려야 하는가 하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의미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 경우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능수복의 직무가 무엇인지가 전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책임 개념에만 익숙한 입장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례였을 것이다.

책임 개념이 새로 부가된 의미까지를 포함하여 우리말에 확고히 정착하게 된 것은 애국계몽기를 지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 간행된 많은 계몽잡지의 논설들에서 책임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앞에서 언급한 모든 용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또한 법학교과서들이 간행되기도 하는데, 이들 도서에서 ‘민사책임’, ‘형사책임’, ‘불법행위책임’ 등,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근대적 법학의 책임 개념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범죄성립요건으로서 행위자의 주관적 조건 역시 책임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는 우리의 책임 용례 중 가장 늦은 출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필자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적어도 1905년 이전의 문서들에서는 책임 단어의 그런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형법전에 해당하는 1905년의 《형법대전》은 그 좋은 예이다. 오늘날 범죄성립요건으로서 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형법대전은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들은 위법성조각 사유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제9절(제87-91조) ‘불론죄론(不諭罪論)’이라는 제목 아래 편제되었다. 프랑스형법전 제2편 제2장의 영향으로 보이는데,<sup>60)</sup> 프랑스형법전의 해당 장 제목은 ‘책임의 감면사유들’(Des causes d’irresponsabilité ou d’atténuation de la responsabilité)로 되어 있다. 범죄성립요건으로서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책임이라는 용례는 애국계몽기 발간된 법학교과서들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유성준이 강술한 1906년의 《법학통론》, 1907년에 출판된 장도의 《형법》 등에서 비로소 그런 사용이 보인다.

이렇듯 책임을 조각하는 한 사유로서 행위자의 주관적 조건들만을 묶어서 바로 ‘책임’으로 명명한 것은 일본에서 독일어 ‘Schuld’를 번역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된

60) 형법대전이 프랑스형법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한말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형법대전의 심의에도 참여했던 크레마지(Cremazy)가 프랑스인이었다. 또한 형법대전은 1897년의 <형법초안>의 영향을 받았고, <형법초안>은 일본 <구형법>(1880)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 법사학연구 제20호, 한국법사학회, 1999, 38, 39쪽). 그런데 일본 <구형법>은 프랑스인 법률고문인 브와소나드의 구상을 기본골격으로 했다고 한다. 川口由彦, 日本近代法制史, 新世社, 1998, 153頁.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Schuld’를 책임으로 번역한 것은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Schuld’에 대한 논의가 도덕철학에서 책임(Verantwortung)의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고전적 모델의 내용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한자어 책임에는 이런 용례와 연결될 수 있는 의미 매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번역을 받아들인 것은 다분히 학문적이고 인위적으로 보인다. 오늘날 책임 개념의 혼란은 이런 번역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동아시아에서 한자어 책임과 서양어 책임은 모두 역할 내지 임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두 단어 사이의 번역의 접촉점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두 단어를 일단 상호 호환될 수 있는 단어로 여기자 다른 서양의 책임의 의미들도 한자어 책임에 전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의미들은 불이익의 부담 그 자체, 혹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규범적 판단인 인과관계의 측면이 과도히 부각된 것이었다. 한자어 책임이 전통적으로 행정용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나 인과관계의 판단은 직무의 위배와 밀접히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의 이런 용례는 쉽게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주관적 요소로서의 과책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논의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해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도덕적 및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양만큼 예민한 전통을 형성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양 책임 개념의 응답이라는 요소에 주목하지 못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 결과 과책의 의미로서의 책임은 전문 법학의 영역에 국한하여 가장 늦게 수용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법학 영역 외에서는 주관적 과책의 의미로서의 책임이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 또한 이런 수용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애국계몽기를 거치면서 안착된 서양의 근대적 책임 개념의 수용이 일본을 통한 간접 수용이었다는 사실도 잠깐 여기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꽤 오랜 기간 한자어 책임 개념이 영어의 ‘responsibility’나 ‘liability’에 상당한다고 생각되지 못했던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 및 한영사전은 1890년에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가 편찬한 《영한저언》인데, 여기에 책임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한편 책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는 명사형 대신 형용사형이 수록되어 있는데, ‘responsible, to be’를 “담당호오. 맞하나오”의 뜻으로 소개하고 있다.<sup>61)</sup> 그리고 ‘liable, to be’의 뜻으로는 “맞당호오. 되기 쉽소”라고 기록되어 있다.<sup>62)</sup> 이듬해 출간된 스코트(John Scott)의 English-Corean

61) H. G. Underwood, 영한저언, Kelly & Walsh, 1890, 219쪽.

Dictionary에서도 ‘responsible’의 뜻은 “당했다, 담당했다, 졌다, 모두다, 감당했다”로, ‘liable’은 “담당했다”로 나와 있다.<sup>63)</sup> 이보다 10년 후에 나온 1911년 판 게일(James Scarth Gale)의 Korean English Dictionary에서도 책임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sup>64)</sup> 반면 1941년에 발간된 존스(G. H. Johns)의 사전에서는 responsibility가 ‘책임, 담당, 담임’으로, liability는 ‘담부(擔負), 담책’으로 번역되어 있다.<sup>65)</sup>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책임이라는 단어가 일상어로까지 퍼지고, 서양어 책임과 대응하는 용어로 인식된 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책임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 V. 현대 책임 개념의 발전: 자유와 책임의 역전

현대에 들어 책임 용례는 역사적 책임, 집단적(collective)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갔다. 그러나 현대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 모든 현상의 최종적 귀결점으로 보이는 책임의 전면화 혹은 절대화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근대적 발상으로는 현대의 수많은 책임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와 피로가 점점 더 분명히 노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의 성격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간 현대의 대표적인 책임 사상가들로는 요나스(H. Jonas)와 레비나스(E. Levinas)를 들 수 있다. 요나스와 레비나스의 이론과 사상은 최근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sup>66)</sup> 그만큼 책임 개념의 현대적 발전은 시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책임 개념의 수용과 비교할 때 서구와 우리에게서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나스의 주저 『원칙으로서의 책임』(Das Prinzip Verantwortung)<sup>67)</sup>은 현대기술에 의해

62) H. G. Underwood, 위의 책, 157쪽.

63) J.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p.271, 197.

64) J. S. Gale, *Korean English Dictionary*, Kelly & Walsh, 1911.

65) G. H. Johns, *An English-Korean Dictionary*,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41, p.148, 94.

66) 국회의 전자도서관 검색 결과로 보면, 한스 요나스의 경우 지금까지 4권의 저서가 번역 출간되었고, 약 50여 편의 요나스 관련 연구 논저가 발표되었다. 레비나스의 경우는 9권의 저서가 번역되었고, 총 500여 편의 연구 논저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난다.

67) H.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zation*, Insel Verlag, 1984: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참조.

증대된 인간의 힘이 동시에 전 지구적 멸망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특정 개인들이나 조직이 아니라 모든 개별적 행위들의 집적에 의해 초래되는 생태적 위기 앞에서 요나스는 자연과 미래세대에 대한 모든 인류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 책임은 다음과 같은 정언적 형태의 명령으로 나타난다. “너의 행동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진정한 삶의 영속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행위하라.”<sup>68)</sup>

여기서 책임은 이제 자신이 미래를 향해 선택한 행동이나 삶의 결과로서 뒤따르는 것이 아니게 된다. 자신의 선택 이전에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책임의 우선성을 근거 짓기 위해 요나스는 근대 이래 지속되어 온 서구의 오랜 형이상학적 가정으로부터 전회를 감행해야 했다. 곧 ‘자연의 중립성’의 가정으로부터 ‘존재의 당위성’(Seinsollen)에 대한 고백으로 돌아선 것이다.<sup>69)</sup> 모든 존재는 자기목적성을 가지며, 그 목적은 그 자체로 선이며, 당위규범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책임의 근대적 모델에서 싹을 보이기 시작한 자유와 책임 관계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스의 보편적 책임은 아직 책임을 떠맡는 주체가 선재한다는 점에서 이 역전의 완성은 아니다.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힘과 자유를 여전히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 책임을 주체에 앞선 것으로까지 끌어간 이는 레비나스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적 주체는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로소 발생한다. 주체의 자유는 바로 이 책임으로부터 주어진다. “자유를 독단(arbitrariness)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의 부여(investiture)”<sup>70)</sup>로서의 타인에 대한 책임! 레비나스는 타인과의 마주침에서 시원적 책임의 발생을 초현상학적 방법으로 기술한다. 그는 타인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일어나는 정서적 동요를 통해 타인의 부름 없는 부름에 이미 응답하고 있음을, 곧 책임의 발생을 이야기한다. 이 정서적 동요는 나의 의식과 의지 이전에 피할 수 없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타인에 대한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책임이다. 주체는 이 의식 이전의 사건을 회고함으로써 비로소 세워지고, 나의 자유는 이 책임 사건으로 인해 가능해진다. 이로써 레비나스는 근대 이래 자유의 근원성을 책임으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존재론의 토대 위에서 윤리, 곧 책임을 도출하는 플라톤 이래의 서구의 전통을 뒤집어 놓았다.

68) H. Jonas, a.a.O., S.36.

69) K. Bayertz, a.a.O., S.57.

70) E. Levinas / A. Lingis(trans.),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0, p.84.

레비나스는 의식과 자유 이전의 시원적 책임으로부터 현상세계의 책임으로 나간다. 나의 무한한 책임은 나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타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책임의 정당한 분배라는 정의의 문제가 대두되고, 비로소 책임의 한계와 권리를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책임 현상은 시원적 책임 사건의 실현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바이에르츠가 요나스의 책임에 대해 명명한 ‘메타 책임’<sup>71)</sup>은 레비나스에 게서 더 깊은 뿌리를 얻게 되었다.

이같은 메타적 주장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반향을,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의심의 눈초리를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메타적 사고와 결합하지 않고서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책임을 짊어져야 할 사태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오늘날 책임 이론에서 보이는 그 복잡함과 왜곡을 어느 정도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책임을 질수록 더 인간이 된다.”는 말은 일말의 진실의 힘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이 점이 앞으로 전개될 책임개념사가 요나스나 레비나스 같은 이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 VI. 맺음말

이상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밝혀진 책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답의 의사소통이 다양한 책임 용례의 공통된 토대이다. 즉 책임은 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벌이는 “의사소통적 대결”<sup>72)</sup>이다. 이는 책임과 의무의 차이 및 영어 ‘responsibility’가 ‘liability’나 ‘accountability’와, 그리고 독일어 ‘Verantwortung’이 ‘Schuld’나 ‘Haftung’과 어떤 점에서 용례의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한다. 다양한 방향으로의 책임의 의미의 확장은 ‘respond’의 다양한 활용성을 매개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무슨 내용에 대해 대답한다(answer for)는 맥락에서뿐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가령 질문, 호소, 명령 등에 대해 응답한다(respond to)는 맥락에서도 사용된다.<sup>73)</sup>

둘째, 책임은 이중적 의미에서 관계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책임이란 행위자

71) K. Bayertz, op.cit., S.60.

72) Ibid., S.16.

73) P. Ricoeur, op. cit., p.12.

의 내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선 책임은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관계적이다. 또한 책임은 그런 실천적 문제 해결을 의사소통의 형식 안에서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관계적이다.<sup>74)</sup> 의사소통은 항상 의사소통의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책임이 작용하는 방식과 기준은 법, 도덕, 정치 등 각 영역마다의 문답의 당사자, 문답이 이루어지는 심급의 차이, 그리고 문답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셋째, 책임은 세계 내의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소위 강한 결정론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나 행위 당시에 해당 행위와 다른 행위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책임은 자신의 인격을 조정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책임의 맥락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잘못이 없이도 장래의 결과를 위해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책임의 메타적 시원성을 인정할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말 책임 개념은 서양의 책임 개념의 문답적 요소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고, 그런 점에서 부담의 의미가 훨씬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또한 책임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서양의 여러 인근 단어들까지 포함하는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말 책임 개념의 혼동에는 이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올바른 책임 실천을 위해 책임의 다양한 용례들과 그 의미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74) 양천수는 일찍이 요나스의 책임원칙을 소개하는 가운데, “책임구상은 일종의 의사소통적 현상으로서 각각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양천수, “책임구상의 다양한 지평: 한스 요나스의 책임원칙을 예로 하여”, 안암법학 제30권, 안암법학회, 2009, 149쪽)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책임의 개념사적 이해에 부합한다. 다만 양천수는 이를 역사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이 언어귀속의 문제라는 이론적 차원에서 설명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고려사》 15권.

《東人之文四六》 7권.

아리스토텔레스, 최명관 옮김, 니코마코스윤리학, 서광사, 198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漢韓大事典 제13권,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川口由彦, 日本近代法制史, 新世社, 1998.

A. Hamilton / J. Jay / J. Madison, *The Federalist Papers*, Random House LCC US, 2003.

E. Levinas / A. Lingis(trans.),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0.

G. H. Johns, *An English-Korean Dictionary*,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41.

H. G. Underwood, 『영한죽년』, Kelly & Walsh, 1890.

H.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lization*, Insel Verlag, 1984: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H. L. A. Hart,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 S. Gale, *Korean English Dictionary*, Kelly & Walsh, 1911.

J.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K. Bayertz, *Verantwortung: Prinzip oder Problem?*,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Lévy-Bruhl, *L'Idée de Responsabilité*, Paris: Librairie Hachette, 1884.

M. Weber, *Politik als Beruf*, Duncker & Humbolt, 1919: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문예출판사, 2017.

S. A. Seeger, *Verantwortung: Tradition und Dekonstruktion*, Königshausen & Neumann, 2010.

## 2. 학술지

- 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 법사학연구 제20호, 한국법사학회, 1999, 31-56쪽.
- 양천수, “책임구상의 다양한 지평: 한스 요나스의 책임원칙을 예로 하여”, 안암법학 제30권, 안암법학회, 2009, 147-181쪽.
- H. Lenk / M. Maring, “Verantwortung”, in: J. Ritter(Hrs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11*, Basel: Schwabe, 1971, S.566-575.
- L. Fonnesu, “Der Begriff der Verantwortung in der Neuzeit und in der Aufklärung“, L. Heidbrink / C. Langbehn / J. Loh(Hrsg.), *Handbuch Verantwortung*, Springer VS, 2017, S.111-132.
- M. Forschner, “Verantwortung”, Görres-Gesellschaft(hrsg.), *Staatslexikon 5Bd.*, Freiburg/Basel/Wien: Verlag Herder, 1989, S.590-593.
- P. Ricoeur,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An Essay in Semantic Analysis”, in: P. Ricoeur, *The Ju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p.11-35.
- R. McKeon, “The development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Vol.11*,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1957, pp.3-32.
- S. Beck, “Schuld und Verantwortung”, E. Hilgendorf/J. C. Joerden(Hrsg.), *Handbuch Rechtsphilosophie*, J. B. Metzler Verlag, 2017, S.394-400.

## 3. 인터넷 자료 (or 전자문헌)

- A. Bain, *The Emotions and the Will*, London: John W. Parker and Son, 1859. <[https://books.google.co.kr/books?id=S\\_MMAQAAMAAJ&pg=PA564&hl=ko&source=gbg\\_toc\\_r&cad=3#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S_MMAQAAMAAJ&pg=PA564&hl=ko&source=gbg_toc_r&cad=3#v=onepage&q&f=false)>, 검색일: 2018.12.6.
- F. H. Bradley, “The Vulgar No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Connection with the Theories of Free-Will and Necessity”, *The Ethics*, 1876, pp.1-38. <[https://books.google.co.kr/books?id=uFuMNgwBKeUC&pg=PA1&hl=ko&source=gbg\\_toc\\_r&cad=3#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uFuMNgwBKeUC&pg=PA1&hl=ko&source=gbg_toc_r&cad=3#v=onepage&q&f=false)>, 검색일: 2018.12.6.

- H.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55.  
<<https://archive.org/details/elementsofintern00whea&autoplay=1&playset=1>>, 검색일: 2018.12.6.
- J. S. Mill, *An Examination of Sir William Hamilton's Philosophy and of the Principal Philosophical Questions Discussed in His Writings*, 2nd edit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65. <[https://books.google.co.kr/books?id=-lpxyZrR-0C&pg=PA488&hl=ko&source=gbs\\_toc\\_r&cad=3#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lpxyZrR-0C&pg=PA488&hl=ko&source=gbs_toc_r&cad=3#v=onepage&q&f=false)>, 검색일: 2018.12.6.
- M. Schefzyk, "John Stuart Mill: Ethics",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www.iep.utm.edu/mill-eth/#H12>>, 검색일: 2018.12.6.
- <<http://d.hatena.ne.jp/t-hirosaka/20080417/1208418601>>, 검색일: 2018.12.6.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33360&cid=51293&categoryId=51293>>, 검색일: 2018.12.6.
- <<https://blog.naver.com/imaginehan/10174754565>>, 검색일: 2018.12.6.

## [ Abstract ]

## A Historical Inquiry into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Responsibility

Lee, Young-Lok\*

This paper pursues an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responsibility by the way of the conceptual history of responsibility. The word ‘responsibility’ began to be used in the mid 18th century, and had been spread out with the idea of democracy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t had soon replaced the word ‘imputation’ in the field of philosophy. As a result, responsibility, until now, has the double structure of meaning. In other words, it includes the meaning structure which the traditional philosophical word ‘imputation’ brought as well as the new meaning structure which the word ‘responsibility’ has newly added. Recently, some philosophers with more and more persuasion maintain that responsibility should be precedent to freedom.

The historical inquiry as above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regarding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responsibility. i) Responsibility is a kind of communication over the justification of an action. ii) It is not the fixed, but relational concept in that its content depends on the relation of the parties of the communication, and also the practical concep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ii) It has been developed on the premise that it is compatible with the weak determinism in the sense of impossibility of other acts other than the act done. iv) The Korean word ‘responsibility’(책임) has weakened the nuance of communication, but strengthened the nuance of burden.

[Key Words] responsibility, liability, imputation, communication, free will, determinism,  
Hans Jonas, Emmanuel Levinas

---

\* Professor, College of Law, Chosun University

